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디지털복지기금 설치〉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3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참고사항 .....            | 1 |
| IV . 검토의견 .....             | 2 |
| 1. 디지털복지기금 설치(안 별표 2)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콘텐츠·플랫폼 위주의 ICT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의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아울러 ICT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감면 범위의 확대 및 그에 따라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V. 검토의견

### 1. 디지털복지기금 설치(안 별표 2)

| 현행             | 개정안                              |
|----------------|----------------------------------|
| ○ 별표 2<br><신설> | ○ 별표 2<br>- 전기통신사업법<br>(디지털복지기금) |

현행법 제5조<sup>1)</sup>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디지털복지기금’의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법률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기금명 | 디지털복지기금                                                                                                                                                                                    |
| 재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서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li> <li>◦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ul> |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li> <li>◦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li> </ul>                                          |
| 관 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sup>2)</sup>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 통신요금 감면 기준<sup>3)</sup> >

| 구 분        | 장 애 인 ·<br>국 가 유 공 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br>계 층                         | 기초연금수급자 |
|------------|--------------------------------|-----------------------------------------------------|----------------------------------------------------|------------------------------------|---------|
|            |                                | 생계 · 의료급여                                           | 주거 · 교육급여                                          |                                    |         |
| 시내<br>전화   | 월 통화료<br>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br>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 시외<br>전화   | 월 통화료<br>50% 감면<br>※ 최대 3,000원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 인터넷<br>전화  | 월 통화료<br>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br>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
| 이동<br>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br>35% 감면            | 기본료 월 26,000원 감면<br>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br>※ 최대 33,500원 | 기본료 월 11,000원 감면<br>및 초과 요금 35% 감면<br>※ 최대 21,500원 | 월 청구요금 중<br>50% 감면<br>※ 최대 11,000원 |         |
| 번호<br>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 -                                                  | -                                  | -       |
| 초고속<br>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2025. 3.)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이 전화 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회선 사용료 감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콘텐츠·플랫폼 위주의 ICT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에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 국민의 디지  
털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복지의 범위를 콘텐츠·디지  
털 플랫폼 이용료 등까지로 확장하고,

디지털복지를 국가뿐만 아니라 디지털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부담  
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규정하고 기존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던  
통신사뿐만 아니라 네이버·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sup>4)</sup>에게도 디지털복  
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음.

따라서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  
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장애인·저소  
득층 등 취약계층의 콘텐츠·플랫폼 이용료 등 디지털서비스 비용을 지  
원하려는 것으로,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서  
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전기통신서비스 지원  
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해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낮고, 기금 재

---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  
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  
로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원이 부담금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포함하는 개념인 방송통신의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방송통신발전기금’<sup>5)</sup>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웹툰, OTT 시청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은 시급성이 크지 않으며, 사업 목적이 모호해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

---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과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지에는 공감하나, 기금 운용 시 큰 규모의 재원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재원 부담의 주체·기준 및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동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복지기금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인해서 영상, 음원, 도서 등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수의 콘텐츠 제작·유통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어 콘텐츠산업의 위축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이미 문화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구독료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6)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

---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

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sup>7)</sup>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서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이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동 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재원-용도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sup>8)</sup>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보편적 역무’

---

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7)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전기통신서비스 지원은 재정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 대한 의무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신축적 사업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금 신설 외에 일반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담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

8)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② 법 제4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전기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은 사업 환경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사업 범위가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중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다른 매출과 구별하여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별표 2<br><br><u>&lt;신 설&gt;</u> | 별표 2<br><br>72. 「전기통신사업법」 |

|              |
|--------------|
| 문 의 처        |
| 02)6788-5152 |

